

**성인지적 장애인정책 개발·평가를 위한
원탁회의**

2004. 7. 9(금)

여성부 사회문화담당관실

여성장애인 현황 및 10대 정책 과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I. 여성장애인의 현황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수는 전체장애인의 약 40%인 56만 명으로 추정됨.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인 450만 명이 장애인이며 그 중 45%인 약200만 명을 여성장애인으로 볼 수 있음.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7%인데 비해 비장애여성은 35%, 남성장애인은 41.1%, 비장애 남성은 17.8%로 나타남.
-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가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 취업 상태는 19.5%로 남성장애인 43%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고 대부분 기술부족으로 단순노무에 취업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취업에 그치는 실정임.
- 2002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44.7%가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녀교육 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학습지도, 병원 데려가기 등을 지적하고 있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도 상담통계를 보면 총1600회, 284건으로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강간 55.9%(159건), 성추행30.9%(88건), 성희롱 15.5%(44 건) 순. 피해의 지속성을 보면 1회에 그친 경우가46.5%(132건), 2회 이상 33.8%(96건), 1년 이상 17.6%(50건), 5년 이상 2.1%(6건) 등으로 나타나 지속적 피해의 비율이 매우 높음.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40.0%로 남성장애인 26.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02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67.1%가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여성의 두 배에 달하고 있음.

- 재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여부에서 팩스(남성장애인 3.2% 여성장애인 1.5%), 컴퓨터(남성장애인 14.4%, 여성장애인 5.5%), 인터넷(남성장애인 9.0%, 여성장애인 3.6%)등에서 여성장애인의 보유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II.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현황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등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들 조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복지법 제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모든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 됨. 가장 두드러진 예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별통계 구축이 미비하고 성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음.
- 2004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3천 36억원에 이르지만 이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의 차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몰성적 일반예산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성 특정적 예산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2억2천만원 정도로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여성장애인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큼.

III. 여성장애인 10대 정책과제

1. 여성장애인 정책수립의 방향

1) 기본권 보장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고 양성 평등과 장애·비장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모성권 등 사회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의 통합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배제되고 성별통계와 성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성인지적 관점이 철저히 간과 되어옴.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소수자인 여성장애인 문제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따라서 성적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필요하며, 여성관련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시각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필요함.

2. 여성장애인이 요구하는 10대 정책과제

1. 관련부처 내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와 국회의원 및 고위 결정직에 여성장애인 할당제 실시

1) 선정이유

여성부·복지부·교육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인력이 없고 국회의원 및 고위 결정직에 여성장애인의 진출비율이 매우 미미하여 여성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한계가 큼.

2) 세부과제

- 여성부,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 국회의원·시, 도의원 비례대표직에 여성장애인 5% 할당
- 모든 공직에 여성장애인 5% 할당
- 여성관련 위원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등에 여성장애인 참여 강화
- 관련 정책의 결정·집행자를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의무화

2. 인권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1) 선정이유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중첩된 차별 속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 여성과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도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이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음.

2) 세부과제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연금법, 이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구체적으로 명시
- 성폭력특별법상의 장애인 관련 조항 개정하고 신규조항 삽입하며, 가정폭력방지법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신설
- 학교교육 과정과 법률·의료·행정·언론 등 관련 교육과정에 여성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화
- 방송언론 매체에 대한 여성장애인 모니터링 강화

3.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화와 지원제도 마련

1) 선정이유

최근의 모성권 논의는 비장애여성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음. 2002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44.7%가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녀 교육 시가 상 어려운 문제로는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학습지도, 병원 데려가기 등을 지적하고 있음.

2) 세부과제

- 출산 수당 지급
- 자녀 양육 수당 지급
- 산전, 산후, 양육 및 학습 도우미 제도 마련
- 피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보육시설 등에 여성장애인 자녀 우선 입소 제도화

4.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1) 선정이유

199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전국여성장애인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여성의 절반인 49.5%가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도 상담통계를 보면 총 1600회, 284건으로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강간 55.9%(159건), 성추행 30.9%(88건), 성희롱 15.5%(44 건) 순. 피해의 지속성을 보면 1회에 그친 경우가 46.5%(132건), 2회 이상 33.8%(96건), 1년 이상 17.6%(50건), 5년 이상 2.1%(6건) 등으로 나타나 지속적 피해의 비율이 매우 높음.

2) 세부과제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의 증설 및 운영비 상향 조정
-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쉼터) 신설
- 여성장애인 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의료·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
- 성·가정 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과정에 여성장애인 관련 강좌 의무화

5.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선정이유

2002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67.1%가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여성의 두 배에 달하고 있음.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67%로 전 국민 대상조사 19.5%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2) 세부과제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 여성장애인 전문병원 지정 및 의료관리체계 확립
-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확대 및 방문 간호 제도 마련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 보완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매뉴얼과 의료진을 위한 가이드 제작 배포

6.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1) 필요성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7%인데 비해 비장애여성은 35%, 남성장애인은 41.1%, 비장애남성은 17.8%로 나타남. 대졸 이상의 학력은 4.2%로 고학력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실정임.

2) 세부과제

-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성별통계 구축
- 장애여아 조기교육 의무화
- 성인지력 향상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과 과정에 의무화
-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 개발
- 여성장애인 지도자를 위한 의식화 교육과 리더십 훈련 지원

7. 현실성 있는 여성장애인 생계대책 마련과 평등한 노동권 보장

1) 선정이유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가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취업상태는 19.5%로 남성장애인 43%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술부족으로 단순노무에 취업하고, 신원보증문제, 안정된 취업처가 없어 일시적인 취업에 그치는 실정. 충북지역에 거주, 활동하는 여성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7명이었고 취업자는 1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명은 다른 가족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세부과제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여성장애인의 생계지원책 마련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 장애인 취업관련 성별통계 구축
-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50%를 여성장애인으로 할당 명문화
-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작업의 체계화와 여성 장애인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적합직종 분야에는 여성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융자금 중 여성장애인 할당 명문화

8. 여성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1) 선정이유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40.0%로 남성장애인 26.7%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재가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에서 팩스(남성장애인 3.2%, 여성장애인 1.5%), 컴퓨터(남성장애인 14.4%, 여성장애인 5.5%), 인터넷(남성장애인 9.0%, 여성장애인 3.6%)등에서 여성장애인의 보유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2) 실천과제

- 편의시설 대상건물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남, 녀 반드시 구분하여 설치

- 여성장애인의 몸의 조건에 맞게 주택 개조

- 뇌병변·시각·청각·정신지체·지체 장애 등 각 장애영역 여성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서비스 정보에 관한 콘텐츠 개발과 정보 인프라 구축

9.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 마련

1) 선정이유

가부장적이고 비장애중심적인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은 비주체적으로 대상화되기 쉬우며 역량강화가 어렵고 자립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운 형편임.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표방하는 15개 이상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남성중심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실제 기관 담당인력의 90% 이상이 장애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세부과제

- 여성장애인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중증여성장애인에게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모형 개발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 여성장애인 단체지원 확대

1) 선정이유

여성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자조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또한 여성장애인 인권 신장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성·장애 단체, 기타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연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세부과제

- 여성장애인 단체지원금 증액하고 적용 대상 확대

-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국내외 네트워크 조성 지원

- 국제연대 활동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개요 및 쟁점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 부위원장, 한국여장연 정책위원)

I. 제정 운동 방향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장애인복지 시책이 지니고 있는 철학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의 복지 시책은 장애인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행하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으므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차별적인, 다른 그룹으로 취급되었고 비장애인과 다르게 처우되었다. 시혜적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제정된 장애인 관련법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제정되었다.

반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이나 결함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봄으로써, 문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 기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여부는 해당 시책이나 시설이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혹은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 발전해가는 세계장애인운동의 이념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다.

2) 제정 방법론

(1)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만든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의 하나는 '장애인 대중의 힘을 증대'하고, 개인의 '역할과 자유를 확장'시키는 데 있다. 개인의 능력을 함양한다든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이 있기에 본 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Nothing About Us, Without Us), 당사자의 경험과 판단을 우선하여 법안을 만들려고 하였다. 법안소위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활동가와 법조인, 각 분야의 전문 연구인들로 구성되어 모든 법 조항에 대해 토론하였다. 특히 차별금지의 장은 장애인당사자가 각 절의 법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안소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한 규정 한 규정을 다듬어 내었다.

(2) 차별받는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은 전 생애를 두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길고 질긴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차별의 형태도 다양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다르게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는 본 법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다. 장애인에게 있어 절실한 조치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차별로 규정했고, 장애인의 공통된 경험에 의해 도출한 구체적 차별행위를 법문으로 명시했다.

(3)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되도록 한다.

법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장애인관련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험을 통하여 권리구제 수단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으로 하고, 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가 과반수로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차별받은 장애인의 물리적·경제적 불리함을 고려하면서 차별 진정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피진정인이 하도록 하였다. 악의의 차별인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효과를 갖도록 하였으며, 차별간주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II. 법안 주요 골자

1. 공개안의 구조

제 1 장 총칙

제 2 장 차별금지(제1절~14절)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용 / 문화 /체육 / 사법행정·참정권/ 모·부성권 / 성 / 가족·가정·시설/ 건강권 / 폭력

제3 장 여성장애인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 1절~3절 설립 및 운영/ 제2절 조사와 구제 / 제 3절 보칙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칙 / 부칙

- 총 6장, 107조
- 총칙, 차별금지(14개 생활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는 14개 절로 구성), 기구 및 구제절차(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사법적 구제절차(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벌칙 등이 기본적 골격
- 여성장애인 차별의 중요성을 인식 별도의 장으로 구성

2. 주요골자

	장추련 안	비 고
1. 명칭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권리구제의 실효성 중시함
2. 목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	시혜적 시각을 배제하고자 함
3.장애정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로 인해 장·단기 또는 일시적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개인적·사회적 장벽을 말한다.	장애 개념의 모호함을 줄이고자 함.
4.보호대상	장애인과 장애인관련자	
5.장애인 정의	장애인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장애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 병력이나 기타 과거에 장·단기 또는 일시적 장애로 인해 현재 개인적·사회적 장벽을 겪는 사람 / 장애인관련자 - 가족, 주거를 같이하는 자, 장애인을 보조하는 자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요소 포함하고자 함.
6. 차별 정의	장애인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다르게 대하는 경우와 형식상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비장애인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 하는 모든 행위와 표현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조장 모든 행위 등을 포함하고자 함
7. 성별, 장애의유형, 장애인의 정도에 대한 차별	제 2장의 차별금지의 각 생활영역에서 언급	

	장추련 안	비 고
8.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제 5조 1항 2항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통제할 권리는 장애인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9. 차별금지 영역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 체육, 사법·행정·참정권, 모·부성권, 성·가족시설, 건강권 폭력	차별은 특수영역 뿐만 아니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므로 꼭 필요한 영역을 담으려고 함.
10.차별금지 조항과 차별 간주 행위	제 2장 14절에서 차별금지 조항 및 차별 간주 행위 언급	차별금지조항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차별금지의 현실성을 위한 차별간주 행위 조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차별행위를 명시하여서 이 행위가 있을시 바로 차별이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임.
11.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장 여성장애인 및 제2장(모·부성권, 성·가족가정·시설, 건강권, 폭력)에서 언급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같은 일상생활 및 생활영역에서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매우 심각하며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여성장애인 차별금지가 법안 전체에서 녹아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모든 생활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자 함.
12. 장애인 차별금지 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포함)과 비상임위원 4인, 위원중 3인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의원 중 5인 이상 장애인이고 그 중 2인 이상 여성장애인이어야 함.	
13. 위원회 권한	조사, 시정권고, 시정명령	
14. 차별 입증	제 5장 99조 입증책임 언급	
1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제98조 악의에 의한 차별의 경우 3배에서 10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 그 하한금액을 500만원 -악의적인 추정은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차별행위를 반복한 경우	장애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위계효과를 통하여 차별예방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 해 제한적 도입이 필요함.

Ⅲ. 여성장애인에 관한 주요 골자

1. 여성장애인 장 설정

- 본 법은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 발생하는 차별금지를 정하였다. 제3장 여성장애인을 두어서 같은 일상이나 생활영역에서도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빈번하고 강도가 다르며, 다른 형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주의하도록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체의 흐름이 남성중심주의적인 시각에 기울지 않도록 감시·조절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중첩적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시각을 많이 반영하고자 법제위 구성단계부터 여성분과를 구성함.

2. 각 절에 성별과 장애의 유형 및 정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제2장 차별금지 내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성별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의한 차별 금지를 규정함.
(제7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제30조 제1항).

3. 장추련 여성차별연구팀의 연구결과를 4개의 절로 이끌어 냄.

기존에 차별금지 영역에 설정되지 않았던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시설, 건강권, 폭력의 각 절은 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차별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함. 특히 중증남성장애인도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에 공감하여서 차별금지 장에 성별 포용적 관점으로 담음.

IV. 입법화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안)의 위상

- 가장 주요한 문제는 장애인 차별을 한국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차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장애인 차별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동안의 행보로 보아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적, 물적 낭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를 창설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위상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변화, 사회적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일단 대통령 직속 하에 두는 것으로 함.
- 위원의 지위 및 역할,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및 비교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으며, 장애인의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그중 여성장애인의 비율을 40%로 함으로써, 위원회의 인적 구성상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이 보다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함.

2. 권리구제의 방법

○ 시정권고/시정 명령/긴급구제조치

차별 가해자가 私人인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복하는 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직접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시정권고/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전환시킴..

○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사법적 권리구제 방법)

사법적인 수단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 민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 즉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됨. 이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은 ① 입증책임의 전환, ② 징벌적 손해배상, ③ 집단소송제도 검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

과도한 역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위계효과를 통하여 차별 예방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한을 하였다. 악의에 의한 차별로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하한 금액은 500만원으로 함. 악의의 추정은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차별 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경우로 함.

○ 입증책임의 전환

최소한 장애인차별금지(및시정)위원회에서 시정권고/요구/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당연히 입증책임을 전환(원고→피고)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법안에 담기지 못한 집단소송제도 검토

공개 안에는 담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각도에서 고려 중